

『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(2016년도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는 모바일·디스플레이·전자의료기기 등 풍부한 ICT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IOT융합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남유진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70,000천원

※ 1차년도('16. 6월~'17. 2월) 소요예산 중 시비 대응자금

○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스마트창작터 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6. 6월 ~ 2018. 12월(3년간)
- (3) 사업위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(금오테크노밸리 내)
- (4) 총사업비 : 15.6억원 (국비 13.5, 시비 2.1)

- 연도별 소요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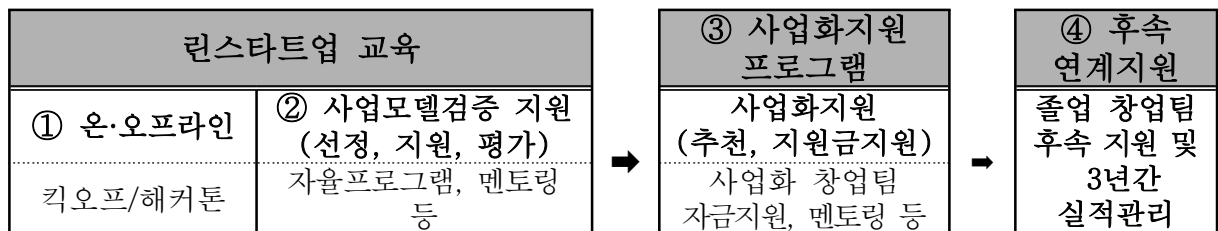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 계획			비고
		'16년	'17년	'18년	
계	15.6	5.2	5.2	5.2	
국 비	13.5	4.5	4.5	4.5	
시 비	2.1	0.7	0.7	0.7	

- (5) 주관부처 : 중소기업청(창업진흥원)
- 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
- 온·오프라인 교육 및 사업모델검증 지원
- 창업팀 구성 및 사업화 지원
- 졸업 창업팀 후속연계지원

<스마트창작터 프로그램 구성개요>



※ 린스타트업(Lean startup) : 만들기 측정 학습(이후 계속반복)

-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(시제품)으로 제조한뒤, 시장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

(8) 연차별 추진계획

구분		2016년(5.2억)	2017년(5.2억)	2018년(5.2억)
세 부 목 표	해외진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창업팀 육성	해외 진출관련 지원 (2건)	해외 진출관련 지원 (4건)	해외 진출관련 지원 (6건)
	지역전략산업/강점분야 연계형 ICT융합 창업생태계 구축	사업화 도출 (5개팀 중 2개팀)	사업화 도출 (5개팀 중 3개팀)	사업화 도출 (5개팀 전원)
	창업자 지속적 이력관리 및 성과 확산	졸업팀 대상 추가지원 프로그램 준비	2016년도 졸업팀 대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(3건)	2017년도 졸업팀 대 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(5건)
매년 사업수행내용		(1단계)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생 모집(200명내외) (2단계) 시장모델검증 25개팀 선정 및 지원 (3단계) 창업 5개팀내외 선정 및 사업화 지원		

(9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'14~'15년 : 1단계 스마트창작터 사업 수행
 - ※ (주요성과) 2년연속 우수 수행기관 선정, 창업 9개사, 신규고용창출 14명, 해외진출 3개사 등
- '16. 4월 : 2016년 스마트창작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
- '16. 5월 : 선정평가 및 신규 주관기관으로 선정
 - ※ (기준) 30개 → (신규) 13개 선정
- '16. 7월 : (전담기관과의) 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공고
- '16. 7월 : (1차 모집교육생 대상) 키포프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
- '16. 8월 : (1단계) 수료캠프 및 2단계 키포프 개최
- '16. 9월 : (2단계) 멘토링 워크숍 및 수료캠프 개최
- '16. 10월 : (3단계) 진출팀 선정(전담기관) 및 사업화 수행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2조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16년도 추경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(2016년도)은

- 대량생산체제 기반의 고용 시대가 지나가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,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,
- 모바일, 디스플레이, 전자의료기기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·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, 지역의 강점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,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강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